

다시 도약하는  
대한민국

함께 잘사는  
국민의 나라



# 원산지표시 이렇게 합니다!

음식점



소고기 <호주산>



닭고기 <국내산>



돼지고기 <국내산>



쌀 <국내산>



배추 <국내산>



오리고기 <국내산>



낙지 <국내산>



넙치 <국내산>



방어 <국내산>



전복 <국내산>

# 1

## 공통사항 (대상 업소 및 대상 품목 등)

###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

- ◆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(커피숍, 패스트푸드점, 분식점 등), 집단급식소, 위탁급식소
- **관련법령** :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,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



###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(29개: 농산물 9, 수산물 20)

- 농산물 (9품목)**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양고기, 염소(유산양 포함)고기, 배추김치(원료 중 배추와 고춧가루), 쌀(밥, 죽, 누룽지), 콩(두부류, 콩국수, 콩비지)



- 수산물 (20품목)** 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낙지, 명태(황태,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), 고등어, 갈치, 오징어, 꽃게, 참조기, 다랑어, 아귀, 주꾸미, 가리비, 우렁쉥이(멍게), 전복, 방어, 부세
- ※ 수산물 가공품, 조리·판매·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진열하고 살아있는 수산물 포함

###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인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방법

- ◆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보관·진열하는 경우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 장소 또는 보관 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
- 다만, **거래명세서\***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 등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
- \* **거래명세서 등의 범위** : 공급(납품)자가 발행한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, 영수증(간이 포함), 원산지 증명서, 현재 보관 중인 식재료의 포장재 표시사항

### 음식점에서 꼭 보관해야 할 원산지 증명서류(축산물만 해당)

- ◆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31조 또는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등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(간이영수증 포함)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**6개월간 비치·보관해야함**(식육, 포장육, 식육가공품(양념육, 분쇄가공육, 갈비가공품, 식육 추출 가공품만 해당))
- **대상 품목** 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양고기, 염소(유산양 포함) 고기

# 2

## 대상 품목별 원산지 표시 방법

### 축산물 소, 돼지, 닭, 오리, 양, 염소(유산양 포함) 고기

- ◆ 식육·포장육·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
- 조리에는 날 것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, 판매·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·제공도 포함
-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(한우, 육우, 젓소)를 함께 표시 (다만,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 생략 가능)

### 배추김치

- ◆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①배추와 ②고춧가루의 원산지를 **각각** 표시
- 배추김치 가공품, 겉절이, 보쌈김치, 백김치 등도 원산지 표시대상임(봄동, 얼갈이배추로 만든 배추김치 포함)
- (참고) 얼갈이배추가 소량 사용된 얼무김치는 배추김치로 정의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 표시대상 아님
- 배추김치 이외에 사용된 고춧가루는 원산지 표시 대상 아님 ※ 수입 배추김치는 4p 참조

### 쌀

- ◆ **밥·죽·누룽지**로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
- 쌀 가공품을 포함하며, 쌀에는 찰쌀, 흑미, 현미, 유색미 및 찌쌀 포함
- (참고) 떡볶이, 떡국 등에 사용된 쌀은 **원산지 표시대상 아님**



### 콩

- ◆ **두부류(가공두부, 유바는 제외)·콩국수·콩비지**로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
- 두부류, 콩국수, 콩비지에 사용되는 콩 가공품(콩 주원료) 포함



### 수산물 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 부세 등 20품목

- ◆ 수산물을 조리·판매·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
- **수산물가공품** : 조리·판매·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·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포함

# 3

## 음식점에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

###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**가공품**의 원산지 표시 방법

◆ 식육가공품·배추김치·쌀·콩 가공품에 사용된 주원료 중 음식점의 농·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**29개**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함 (29개 품목: 2p 참조)

\* **주원료** :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, 특정 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

#### 1 식육가공품이란?

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에 따른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서 정의한 **햄류, 소시지류, 베이컨류, 건조저장육류, 양념육류(양념육, 분쇄가공육제품, 갈비가공품, 천연케이싱), 식육추출가공품, 식육합유가공품, 식육간편조리세트**

※ 만두류, 소스류, 즉석조리식품류 등에 사용된 축산물은 표시 대상 아님

#### 2 식육가공품 사용 시

주원료로서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내의 원료\*중 **식육**의 원산지를 표시

\*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제1호 참고

· 수입원재품을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[예시 : 소시지야채볶음(소시지 : 미국산)]

#### 3 쌀·콩·배추김치·수산물 가공품 사용 시

주원료로서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내의 원료\*중 **쌀·콩·배추김치(배추와 고춧가루)**의 원산지를 표시

\*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제1호 참고

· 다만,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(쌀, 콩, 수산물)가 **복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**

· 수입원재품을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[예시 : 김치찌개(배추김치 : 중국산)]

#### 예시

- 김치만두(식품유형 : **만두류**)
- (1순위) 밀가루 30%(밀 : 미국산),
- (2순위) 배추김치 25%, [배추(국산), 고춧가루(중국산)],
- (3순위) 돼지고기 25%(국내산), 마늘 10%, 양파 5%, 고추장 5%

#### 원산지 표시

- **식품의 유형** : 만두류(식육가공품 아님)
- **주원료** : 밀가루, 배추김치, 돼지고기
- **음식점 원산지 표시**  
⇒ 김치만두[배추김치(배추 : 국내산, 고춧가루 : 중국산)]
- \* 식육가공품이 아니므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님

#### 알아두기

### 음식점에서 가공품(빵, 과자, 아이스크림류 등)을 판매하는 경우

- 직접조리(세트메뉴 포함)하여 판매하는 경우(음식점 표시기준 적용)  
※ 조리는 단순 가열(ex 전자렌지 등), 토핑을 포함하며, 실온해동은 포함하지 않음
- 완제품 또는 완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(가공품 표시기준 적용)
- 완제품을 판매할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추가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(단, 구매시점에 포장재의 원산지 표시를 볼 수 없는 경우 → 풋말, 안내표시판으로 게시)

# 4

## 상황별 원산지 표시 방법

### 모든 메뉴에 들어가는 원료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

◆ 원산지 표시는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 대상과 함께 표시해야 하며, **일괄 표시 가능**

#### 예시

#### 꽃이네 메뉴판

삼겹살(돼지고기 : 국내산) 목살(돼지고기 : 칠레산)  
공기밥, 누룽지 고추장찌개, 된장찌개  
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과 두부(콩:외국산)만을 사용합니다.

#### 맛나 돈가스집

카레돈가스 김치돈가스(배추김치 : 중국산)  
수제돈가스 공기밥  
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과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합니다.

###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 사용할 경우

◆ **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('섞음' 표시 권장)**

**국내산(국산)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(국내산 > 외국산)**

- 불고기(쇠고기 :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**섞음**) 또는 (쇠고기 : 국내산 한우, 호주산)
- 닭갈비(닭고기 : 국내산과 브라질산 **섞음**) 또는 (닭고기 : 국내산, 브라질산)

###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혼합 사용할 경우

◆ **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 해야 함. 이때 '섞음' 표시는 하지 않음**

- 쇠고기 야채죽(쇠고기 : 미국산, 쌀 : 국내산) · 햄버그스테이크(쇠고기 : 국내산 육우, 돼지고기 : 미국산)

### 조리음식에 사용한 **원료의 원산지가 변경**되는 경우

◆ **음식 원료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해당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 해야 함**

#### 예시

#### 짱이네 메뉴판

닭갈비(닭고기 : 국내산과 브라질산을 섞음)  
배추김치(배추 : 국내산, 고춧가루 : 중국산)



#### 짱이네 메뉴판

닭갈비(닭고기 : 국내산과 **태국산**을 섞음)  
배추김치(배추 : **중국산**, 고춧가루 : **국내산**)

### 원산지를 **'외국산'**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

◆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**'외국산(A·B·C 국 등)'** 또는 **'외국산'**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음식점에서는 국가명을 생략하고 **'외국산'**이라고 표시 가능

#### 예시

피자[햄(돼지고기 : **외국산**)], 된장찌개[두부(콩 : **외국산**)]

※ 다만, **가공품이 아니라면**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도 '외국산'으로 표시 불가능하고, 해당 원산지를 표시 해야 함

# 5

## 매장에서의 표시 방법

### 공통사항

구분	표시 방법
표시위치	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산물명과 원산지 표시
글자크기	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

### 음식점 형태별 표시 방법

음식점 형태	표시 방법
①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	<b>기본</b>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 <b>추가</b> 취식장소가 벽, 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 표시
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	㉠ 일반 <b>기본</b> 월간 메뉴표, 메뉴판, 게시판, 팸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
	㉡ 교육·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 <b>기본</b> 월간 메뉴표, 메뉴판, 게시판, 팸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<b>추가</b>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교육·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
	㉢ 장례식장, 예식장, 병원 등에서 영업 <b>기본</b> ① 또는 ㉠ 또는 ㉡

### '원산지 표시판' 세부 제작기준

※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·부착하면 게시판과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

표시판 제목	'원산지 표시판'
표시판 크기	가로 x 세로(또는 세로 x 가로) 29cm x 42cm 이상
글자크기	60포인트 이상 (※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)
글자색	바탕색과 다른색으로 선명하게 표시
부착위치	<b>기본</b>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부착 ※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: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 게시판이 없을 때 :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

글자크기 예시  
**60** 포인트 **30** 포인트

※ 원산지 표시판 예시 참조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홈페이지) ⇒ 업무소개 ⇒ 원산지관리 ⇒ 원산지 표시 관리 ⇒ 안내 및 참고 자료(원산지표시판 작성 예시 및 양식)

# 6

##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 방법

### 통신판매의 정의와 범위

◆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신판매 중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

###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 방법

통신매체별 표시 방법		
구분	전자매체 이용(인터넷, 배달앱, TV등)	인쇄매체 이용(신문, 잡지 등)
표시 위치	<b>① 원칙</b>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·위·아래에 붙여서 표시 <b>② 허용</b>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첫 화면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·위·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 가능 <small>※ 첫화면이란?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</small>	<b>① 원칙</b>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에 표시 <b>② 허용</b>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
표시 시기	대상 제품이 화면에 표시 되는 시점부터 표시	-
글자 크기	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(최초 등록된 가격 표시 기준)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<small>※ 별도의 창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표시 가능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·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</small>	<b>① 원칙</b>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/2이상 <b>② 허용</b> 광고면적 기준 8~20포인트 이상 <small>※ 농산물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준용</small>
글자색	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와 같은 색	

### 배달을 통해 소비자에게 음식이 전달되는 경우

표시 방법	<b>원칙</b> 표시 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 <b>허용</b>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,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<b>※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경우 29개 대상 품목 원산지 표시</b>
-------	--

# 원산지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

##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분 기준

### 형사처분

**형사처분**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
**상습위반자**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 
 •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

### 과징금

**과징금** 위반금액의 5배 이하(최고 3억원 이하)의 과징금  
 ※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(거짓표시 등)을 위반하는 경우

### 위반업체 공표

**농식품부, 농관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**  
 • 영업소 명칭, 주소, 위반내용 등

###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

**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**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 
 •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

##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처분 기준

< 과태료금액 (단위: 만원) >

구분	위반행위	1차	2차	3차	4차
과태료	쇠고기 원산지 미표시	100	200	300	300
	쇠고기 식육 종류 미표시	30	60	100	100
	돼지, 닭, 오리, 양, 염소(유산양 포함)고기, 쌀, 배추김치(배추, 고춧가루), 콩 미표시	품목별 30	품목별 60	품목별 100	품목별 100
	수산물 표시대상 20품목 미표시	품목별 30	품목별 60	품목별 100	품목별 100
	살아있는 수산물 미표시	5 ~ 1,000 이하			
	표시방법 위반	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/2(5~1,000 이하)			
	영수증 등을 비치·보관하지 않은 경우 (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와 관련)	20	40	80	80
위반업체 공표	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공표(공표 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)				
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	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교육 이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원산지 표시 제도 교육 이수 *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				